

3 생활에 필요한 수속

3-1 외국인 시민을 위한 제도

재류 관리 제도 일본에 중장기간(3개월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

(1) 재류카드

재류카드는 상륙허가 등 재류와 관련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국적·지역 외,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기재되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해
주십시오.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분실물 신고증명서」(분실물 신고서)를 받아
본인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류에 관한 수속【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의 수속】



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여권, 사진, 재류카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② 재류자격에 근거한 활동의 변경 또는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이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여권, 사진, 재류카드, 소정의 자료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2-31 TEL 082-221-4412

특별영주자 제도 특별영주자는 재류 관리 제도와는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1) 특별영주자 증명서

특별영주자인 분에게는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특별영주자 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국적·지역 외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기재되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16세 미만으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분은 16세 생일까지 특별영주자
증명서로 전환해 주십시오.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구청에 신청해 주십시오.
새로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영주자에 관한 수속【거주지 시구청촌에서의 수속】

- 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여권(소지자에 한함), 사진, 특별영주자 증명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 ②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여권(소지자에 한함), 사진, 특별영주자 증명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

이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 출국 시,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유효한 여권과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한 특별영주자
→ 출국 시,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재류 관리 제도·특별영주자 제도에 관한 문의처

외국인재류 종합정보센터

접수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30 ~ 17:15

휴 일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12월 29일 ~ 1월 3일

TEL 0570-013904 (IP 전화·해외에서는 03-5796-7112)

3-2 주소 관련 수속

중장기 재류자 또는 특별영주자는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1) 일본에 살기 시작한 경우(중장기 재류자)

거주지가 정해지면 14 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거주 중인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P39)에 주소등록을 신청해 주십시오.

재류카드를 아직 받지 못한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2) 이사할 경우

① 히로시마시에서 다른 시구청촌으로 이사할 경우

이전까지 거주하고 있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P39)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전출신청서). 받은 전출증명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후, 주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앞으로 거주하게 될 시구청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전입신청서).

【필요 서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세대 전원), 전출증명서



② 히로시마시 내에서 이사할 경우

주소가 바뀐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앞으로 거주하게 될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 전출입 신고를 해 주십시오(전출입 신고서).

【필요 서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세대 전원)

메모① 주민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표의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표 사본이 필요한 분은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P39)에 신청해 주십시오.

주민표 사본은 히로시마시 내 모든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모② 마이넘버

마이넘버는 주민표를 등록한 모든 개개인이 가지는 12 자릿수의 번호입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마이넘버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 본인의 마이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마이넘버가 적혀 있는 사진이 부착된 「마이넘버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P39)로 문의해 주십시오.



메모③ 아동수당

0 세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15 세가 된 후 첫 3 월 31 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히로시마시로 전입해 오신 분은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구청 복지과(P41, P42)로 문의해 주십시오.

3-3 출생 신고 / 사망 신고 / 혼인 신고 / 이혼 신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 사망했을 때, 결혼·이혼했을 때는 본국에서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 있는 본국의 관계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거주 중인 구청 또는 출장소(P39)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출입국재류관리국에도 신고해 주십시오.

(1) 출생 신고

신고	기간·대상자	장소
출생 신고	출생일을 포함하여 14 일 이내 전원	거주 중인 구 또는 출생한 구 시민과 (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출장소에서도 가능)
재류자격 취득	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 중장기 재류자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특별영주 허가	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 특별영주자	거주 중인 구 시민과 또는 출장소
출생 연락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전원	거주 중인 구 후생부 지역지원과
아동 수당	출생일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창구로 문의	거주 중인 구 후생부 복지과 또는 출장소 (니노시마 제외)
어린이 의료비 보조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창구로 문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중인 구 후생부 복지과 또는 출장소
국민건강보험	출생일부터 14 일 이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	거주 중인 구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양측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나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아이의 출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사망 신고

신고	기간·대상자	장소
사망 신고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전원	거주 중인 구 또는 사망한 곳의 구 시민과 (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출장소에서도 가능)
국민건강보험	사망한 날부터 14 일 이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거주 중인 구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개호보험	사망한 날부터 14 일 이내 개호보험 가입자	거주 중인 구 복지과 또는 출장소

(3) 혼인 신고

신고	기간·대상자	장소
혼인 신고서	신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부가 됩니다)	거주 중인 구 시민과 또는 출장소 ※국적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결혼한 날부터 14 일 이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거주 중인 구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개호보험	개호보험 가입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 일 이내	거주 중인 구 복지과 또는 출장소

(4) 이혼 신고

신고	기간·대상자	장소
이혼 신고서	협의 이혼의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10 일 이내	거주 중인 구 시민과 또는 출장소 ※국적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혼한 날부터 14 일 이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거주 중인 구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개호보험	개호보험 가입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 일 이내	거주 중인 구 복지과 또는 출장소

메모① 인감등록

일본에서는 사인과 같은 의미로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새긴 도장(인감)으로 날인합니다. 공적으로 등록한 도장(인감)을 「인감도장(実印)」이라 하며, 인감도장의 날인과 등록증명서를 대조하여 그 소유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됩니다.

인감을 등록하고 싶은 분은 등록할 도장(인감)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거주 중인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P39)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또한, 도장(인감)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P39)로 문의해 주십시오.

메모② 히로시마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

히로시마시는 2021년 1월부터 성소수 커플이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서 선서하고 <맹세한> 것을 히로시마시가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제도」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서와 같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의처 : 인권계발과 TEL 082-504-2165)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yasashii/199977.html>



3-4 의료보험

일본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1)~(3) 중 하나에 가입하게 됩니다.

(1) 건강보험

1 주일에 20 시간 이상 일하고 매월 월급이 8.8 만엔 이상 등 조건이 맞는 사람은 회사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2) 국민건강보험

3 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를 허가받은 분은 히로시마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거주 중인 구청 보험연금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에서 수속을 해주십시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①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인 사람으로, 이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 「진료를 받는 활동」 또는 「그 사람의 일상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사람
 - 「관광, 휴양 등 그 외의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배우자」인 사람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인 사람은 그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지정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② 회사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 ③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사람
- ④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 ⑤ 중국 잔류 일본인에 대한 지원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
- ⑥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사람으로 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장 가입증명서를 받은 사람

(3)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 ① 75 세 이상인 사람
- ② 65 세 이상 75 세 미만으로, 일정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인정을 히로시마현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서 받은 사람(인정 절차 방법은 거주 중인 구청 복지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로 문의해 주십시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재류자격이 3 개월 이하인 사람(히로시마현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서 3 개월 초과 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제외)

-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인 사람 중, 「진료를 받는 활동」 또는 「그 사람의 일상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관광, 휴양 등 그 외의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배우자」인 사람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인 사람은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지정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 중국 잔류 일본인에 대한 지원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

(4) 병원에 갈 때

병원 창구에서 가입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카드 리더기(마이넘버카드용)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마이넘버카드를 「피보험자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를 「피보험자증」으로 이용하고 싶은 분은 마이넘버카드 「피보험자증」 이용 등록을 해주십시오.

의료비의 10~30%(나이 또는 소득에 따라서 이 비율은 바뀝니다.)를 지불해 주십시오. 입원했을 때는 식사비 등도 지불해 주십시오.

(5) 출산 및 사망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출산했을 때나 사망했을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의료보험 상담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히로시마시 국민건강보험은 거주 중인 구청 보험연금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로, 후기고령자 의료는 거주 중인 구청 복지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로 문의해 주십시오.)

메모 의료비 보조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의료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구청 각 과(P41, P42)로 문의해 주십시오.

- 0세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15세가 된 후 첫 3월 31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복지과)
- 편부모 가정에서 아동(18세가 된 후 첫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복지과)
- 중증심신장애인 및 정신장애인(복지과)
-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경우(보험연금과)

(6) 보험료

의료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은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5 개호(介護)보험

개호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인지증(치매) 등으로 개호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자

다음 ①~③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히로시마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히로시마시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 ② 사증의 재류 기간이 유효하며, 3개월 이상 일본 국내에 체재할 예정인 경우
단, 재류자격이 「특정 활동」인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진료를 받는 활동」 또는 「그 사람의 일상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사람
 - 「관광, 휴양 그 외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배우자」인 사람

- ③ 40세 이상인 사람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은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히로시마시에서 피보험자증을 보내 드립니다.

(2) 개호 서비스(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먼저 거주 중인 구청 복지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에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을 신청해 주십시오.

요개호 또는 요지원(要支援)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호도(介護度)에 따라 일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비용의 10~30%(소득에 따라 이 비율은 변경됩니다.)를 지불해 주십시오.

요개호인정이 없는 사람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구청 복지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로 문의해 주십시오.

(3) 보험료

개호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은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의 보험료는 가입 중인 의료보험 보험료의 일부로 산정됩니다.

3-6 연금

일본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59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 등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후생 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1) 가입 절차

국민연금은 거주 중인 구청 보험연금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다만,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부양받고 있는 배우자는 직장 또는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직장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2) 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분을 위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구청 보험연금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로 문의해 주십시오.

(3) 연금 종류

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10년 이상의 수급 자격 기간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기초장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일정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사람 등
기초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기초장애연금과 기초유족연금은 일정 보험료 납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구청 보험연금과(P41, P42) 또는 출장소(P39, 단, 니노시마 출장소는 제외)로 문의해 주십시오.

(4) 연금 탈퇴 (탈퇴 일시금)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등을 탈퇴하고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했을 경우,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의 액수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 연금(장애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을 것

일본 출국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일본연금기구에 청구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 탈퇴 일시금 청구서, 기초 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 수첩, 기초 연금번호 통지서 등)
- 여권(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의 사본
-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168-8505 とうきょうとすぎなみくたかいどにしさんちょうめ 東京都杉並区高井戸西三丁目5-24

3-5-24, Takaido nishi, Suginami-ku, Tokyo 168-8505

일본연금기구 TEL 0570-05-1165 (국내에서) +81-3-6700-1165 (해외에서)

3-7 세금

(1) 일본 세금

일본 세금에는 정부가 걷는 국세와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걷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소비세 등
	도도부현세	현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시정촌세	시민세, 고정자산세, 경차세 등

※ 국세는 세무서, 도도부현세는 현세사무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2) 소득세

① 소득세

임금 등 수입이 있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금액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임금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소득세 납부방법

<원천징수>

매월, 회사 등에서 납부합니다. (이 납부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임금에서 세금이 공제됩니다.
- 1월에서 11월까지 납부한 세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12월에 계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더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12월 임금과 함께 환급합니다.

<확정신고>

회사 등의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구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편의점,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으로 납부합니다.

(3) 개인 시민세·현민세(주민세)

① 주민세

개인 시민세와 현민세를 합쳐서 「주민세」라고 부르며,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ext{개인 시민세} + \text{개인 현민세} = \text{주민세}$$

주민세는 그 해 1월 1일에 주소가 있고 전년에 소득이 있던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금액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할」과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인 「균등할」을 합계합니다.

$$\text{주민세 금액} = \text{소득할} + \text{균등할}$$

자세한 사항은 히로시마시 홈페이지(<https://www.city.hiroshima.lg.jp/soshiki/26/199970.html>)를 확인하거나 거주 중인 구를 담당하는 시세 사무소 시민세금계·세무실(P40)로 문의해 주십시오.



② 주민세 납부방법

회사 등이 임금에서 주민세를 공제하여 시에 납부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사람은 시에서 안내 우편이 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까지 편의점,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또한, 시 세금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어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세 등을 미납할 경우

주민세 등 세금을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본래의 세금 외에 연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급여 등의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히로시마시 홈페이지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english/18862.html>)를 확인하거나 거주 중인 구를 담당하는 수납대책부 담당과(P40)로 문의해 주십시오.

메모 조세 조약

- 일본과 조세조약(세금에 관해 국가와 국가간에 정한 약속)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온
- 유학생
 - 사업 연수자(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등) 등

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소득세나 주민세의 과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각각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의 신고만으로는 주민세를 면제 받지 못합니다.

(4) 자동차세·경차세

① 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구입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금액은 구입한 차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자동차세

- 자차를 소지한 사람이 매년 4월 1일에 납부합니다.
- 배기량이 660cc 보다 큰 차는 「자동차세」, 660cc 보다 작은 차는 「경차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할 금액이 적혀있는 우편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히로시마시나 히로시마현에서 본인에게 송부됩니다. 납부금액은 구입한 차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 편의점, 은행,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체국 등에서(우편에 적혀져 있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어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